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내 항공안전감독체계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정비업·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36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권한 위임·위탁과 법률에서 위임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대상 정보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 나. 전문교육기관,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대상 규모를 정함(안 제8조의4)
- 다.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또는 불

가항력 등으로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5)

라.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와 자료 수집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의2 및 제26조 제2항)

마. 위험도 기반 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함(안 제20조의4)

바.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 정비조직인증 갱신 등 지방항공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비함(안 제26조제1항)

사. 자격증명 갱신,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제적성검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26조제6항)

아. 형식증명·제작증명, 전문교육기관, 항공교통업무증명, 항공운송사업자 및 정비조직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와 사전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제8조의3 및 제8조의6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한 실적에 관한 정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정보
3.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발급에 관한 정보
4.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에 관한 정보
5.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정보
6. 법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 등에 관한 정보
7. 법 제43조에 따른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8.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
9. 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관한 정보
10. 법 제55조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에 관한 정보

11. 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자격인정 심사
에 관한 정보

12. 법 제65조에 따른 운항관리사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13.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등의 소속 항공정비사
의 업무 수행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14.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의 항공교통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
의 업무 수행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15.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정정 또는 말소 신고 접수된 정보

16. 그 밖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제1항 중 “법 제48조의3제1항”을 “법 제48조
의5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4 및 제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대상기관 등) ① 법 제58조
제2항제2호가목에서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운항하는 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하
거나 임차하여 교육과정에 사용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소속된 항공종
사자가 1명 이상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항공기를 2대 이상 보유한 항공기 사용사업자.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인 경우에는 1대 이상 보유한 항공기사용사업자

2.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③ 법 제58조제2항제5호에서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정비등의 업무를 하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제8조의5(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보고만으로 그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3항”을 “법 제89조제4항”으로 하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법 제89조제3항에서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방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4제3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6조제1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항공기는”을 “항공기와 같은 법 제2조제38호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0호 중 “발급”을 “발급, 변경검사, 정기 또는 수시검사 및 시정조치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 운영자에 대한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

40의2. 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갱신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제26조제6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관한 업무”를 “관한 업무(시험 및 심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

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격증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 1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9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항공기등이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u>법</u> <u>제20조제9항제2</u> <u>호</u>	20
나.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법</u> <u>제20조제9항제3</u> <u>호</u>	10
다.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법</u> <u>제20조제9항제4</u> <u>호</u> 및 <u>제22조제7항제4</u> <u>호</u>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58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0
2)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2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1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u>운용한 경우</u>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u>10</u>
<u>라.</u>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u>법</u> <u>제22조제7항제2</u> <u>호</u>	20
<u>마.</u>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u>법</u> <u>제22조제7항제3</u> <u>호</u>	<u>10</u>
<u>바.</u> 기술표준품이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당시의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7조제4 항제2호	20
<u>사.</u> 장비품 또는 부품이 부품등제작자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8조제5 항제2호	10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8조의2제1항”을 “제8조의3제1항”으로 하고,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2호	
1) 교육과목, 교육방법 또는 교육평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8
2) 교관 확보 및 교관의 자격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3)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훈련용 항공기의 감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36
(나) 이착륙 시설(훈련비행장)이 훈련용 항공기의 이착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8

4) 교육규정 중 교육과정명, 교육생 정원, 학사운영 보고 및 기록유지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나.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2)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 외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훈련한 경우 3)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훈련용 항공기에 대한 정비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훈련운영기준에서 정한 교육훈련의 품질보증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3호	18 18 18 10
다. 법 제48조제7항 후단에 따른 시정 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3의2호	18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0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4호	10
마. 법 제48조제11항을 위반하여 교육과정을 시작한 사람 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의 명단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4의2호	10
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5호	36
사.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	법 제48조의4 제1항제5의2호	10

우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6)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7)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8)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9)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0)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1)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3)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6호	650 540 432 324 216 108 108 72 54 108 90 72 54

14) 해당 항공기 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36
<u>자.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48조의4 제1항제7호	36 36

비고

위 표의 아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함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2	25,000
<u>나.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1)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400 3,000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1,400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400
<u>단.</u>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3호	4,000
<u>라.</u> 법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4호	1,400
<u>마.</u> 법 제85조제7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5호	2,100
<u>바.</u> 법 제85조제9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6호	1,400
<u>사.</u>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7호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25,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21,000 이상 25,000 미만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17,000 이상 21,000 미만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13,000 이상 17,000 미만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8,000 이상 13,000 미만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4,000 이상 8,000 미만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4,000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3,0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2,100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400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700

비고

1. 위 표의 사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사목1)부터 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별표 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 문	사업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소형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	법	300	60	30	9

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1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1,200	240	120	33
다.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에 검사·정비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900	180	90	25
라.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않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5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900	180	90	25
마.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6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900	180	90	25
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900	180	90	25
사.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법 제91조제1	900	180	90	25

받지 않은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경우	항제8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제91조제1항제9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않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제91조제1항제1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900	180	90	25
차.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11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카.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않는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제91조제1항제12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타.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않은 경우	제91조제1항제13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300	60	30	8
파.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를	법 제91조제1항제14호	400	80	40	11

신지 않고 운항한 경우	및 제95조제1 항·제2항 법	180	36	18	5
하.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야 간에 비행장에 주기(駐 機) 또는 정박(碇泊)시키 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않은 경우	제91조제1 항제15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거.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 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 하게 하거나 계기비행· 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 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16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너. 법 제56조제1항을 위반 하여 소속 승무원 및 운 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17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더. 법 제56조제2항을 위반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로위 험관리시스템을 운용하거 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 우	법 제91조제1 항제18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러.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 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 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 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	법 제91조제1 항제19호 및	400	80	40	11

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며.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며.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95조제1항·제2항 법 제91조제1항제2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법 제91조제1항제21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400	80	40	11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400	80	40	11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00	80	40	11
며. 법 제62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 항공기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1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2) 항공기준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60	30	8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에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60	12	6	2
서.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2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300	60	30	8
어. 법 제63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장에게 운항을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3호	300	60	30	
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4호	300	60	30	
처.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5호	180	36	18	
커.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26호 및 제95조제1	400	80	40	11

터.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항·제2항 법 제91조제1 항제27호 및 제95조제1	400	80	40	11
퍼.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항·제2항 법 제91조제1 항제28호 및 제95조제1	600	120	60	17
허. 법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항·제2항 법 제91조제1 항제29호 및 제95조제1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항공운송이 절대 금지된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나) 위험물취급기준의 적용 면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다) 위험물이 포함된 화물컨테이너나 단위 적재용기를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라)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하지 않고 적재하여 운송한 경우	항·제2항	1,200	240	120	33

마) 폭발성 물질을 격리 구분에 따르지 않고 보관 또는 적재하거나 운송한 경우					
바) 화물기만으로 운송해야 할 위험물을 여객기로 운송한 경우					
사) 위험물의 적재 및 결 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적재하 여 운송한 경우					
아)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포장 및 용기가 손상 된 상태로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경우					
자) 운항승무원에게 위험 물 적재정보를 제공하 지 않은 경우					
차) 방사성 물질의 취급 및 운송규정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		10	6	4	1
고.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 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30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400	80	40	11
노.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법 제91조제1	1,200	240	120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도. 법 제75조제1항을 위반 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항제31호 법 제91조제1 항제32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법	300	60	30	8
로.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않고 항공기를 운 항한 경우	제91조제1 항제33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법	400	80	40	11
모. 법 제76조제3항을 위반 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 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 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 우	제91조제1 항제34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법	400	80	40	11
보.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 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 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 하지 않고 운항하거나 업 무를 한 경우	제91조제1 항제35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가) 감항성에 적합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나)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비행요건을 충족 하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1,200	240	120	33
2) 비행규칙 등 국토교통		400	80	40	11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록물의 보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6	4	1
소. 법 제90조제1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을 시작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36호 및 제95조제1항	1,200	240	120	33
오.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91조제1항제37호 및 제95조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200	240	120	33
가) 인가받은 운항의 종류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항공로·공항의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장비품 등의 사용한 계시간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사용한 경우					

라) 부식방지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부식관리 및 정비를 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항공기 중량배분을 위한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00	80	40	11
3) 지상 제빙(除氷)·방빙(防氷) 또는 신뢰성관리 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80	36	18	5
조. 법 제90조제5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를 검사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	법 제91조제1항제38호 및 제95조제1항	400	80	40	11
초. 법 제90조의2제2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효성 검사 결과 안전운항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제39호의 4 및 제95조제1항	<u>1,200</u>	<u>240</u>	<u>120</u>	<u>33</u>

<u>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만 해당한다)</u>						
코. 법 제93조제1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1,200	240	120	33	
토. 법 제93조제2항 단서(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0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포. 법 제93조제2항 본문(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제41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400	80	40	11	
호. 법 제93조제7항 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제공	법 제91조제1항제42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10	6	4	1	

하지 않은 경우 구.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운항 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PBN)의 운항을 위한 요건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나) 인가받은 항공종사자 훈련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다)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라) 정밀계기접근비행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정밀접근계기비행을 한 경우 마) 최소장비목록(MEL)을 위반하여 작동하지 않는 계기 및 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 정비작업 미수행 등 국	법 제91조제1항제43호 및 제95조제1항·제2항	1,200	240	120	33
2) 정비작업 미수행 등 국		400	80	40	11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보고의 누락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6	4	1
<u>노</u> .	법 제94조 각 호(법 제9 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 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 은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4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600	120	60	17
<u>두</u> .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업무(항공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만 해 당한다)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를 제 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5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u>루</u> .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 나 장부·서류 등의 검 사(항공안전 활동을 수 행하기 위한 것만 해당 한다)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6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u>문</u> .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항 공안전 활동을 수행하 기 위한 것만 해당한 다)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91조제1 항제47호 및 제95조제1 항·제2항	300	60	30	8
<u>부</u>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또는 항공종사자의	법 제91조제1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항제48호 및 제95조 제1 항·제2항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 인 경우		10,000	2,0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9,000 이상 10,000 미만	1,800 이상 2,000 미만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7,200 이상 9,000 미만	1,440 이상 1,800 미만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5,400 이상 7,200 미만	1,080 이상 1,440 미만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인 경우				540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3,600 이상 5,400 미만	720 이상 1,080 미만	360 이상 540 미만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10명 미만 인 경우		1,800 이상 3,600 미만	360 이상 720 미만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인 경우					30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 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 0명 미만인 경우				180 이상 360	150 이상 300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미만 90 이상 180 미만 90	미만 75 이상 150 미만 50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60 이상 90 미만 30	20 이상 50 미만 10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이상 60 미만 15	이상 20 미만 7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0 미만 180	10 미만 50
1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0	360		
1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200 이상 1,800 미만	240 이상 360 미만	120 이상 180 미만	33 이상 50 미만
1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900 이상 1,200 미만	180 이상 240 미만	90 이상 120 미만	25 이상 33 미만
18) 경미한 항공기사고[1)	1,800			

부터 1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항공기사고를 말한다. 이하 19) 및 20)에서 같다]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5회 이상인 경우					
19)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4회인 경우		1,200			
20) 경미한 항공기사고가 비행횟수 3만회 이내에 3회인 경우		900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백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	
1)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u>10</u>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u>10</u>
3)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u>10</u>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u>10</u>
나.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2	<u>10</u>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3호	
1) 인증받은 범위 외에 다음의 정비등을 한 경우		

가) 인증받은 정비능력을 초과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30	
나) 인증받은 형식 외의 항공기등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50	
다) 인증받은 장비품·부품 외의 장비품·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30	
2) 인증받은 정비시설 또는 정비건물 등의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	7	
3) 인증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등을 한 경우	30	
4) 인증받은 범위에서 정비등을 수행한 후 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50	
5) 정비등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정비기록을 작성한 경우	20	
6) 세부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법·품질관리절차 및 수행목록 등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경우[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10	
7)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에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5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98조제1항제4호
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500	
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400	
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250	
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150	
5)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75	
6)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50	

7)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50
8)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0
9)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중상자가 5명 미만인 경우	20
10)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
11)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80
12)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
13)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
14)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10

비고

위 표의 라목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항공교통관제사”를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6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 2028년 5월 28일

2. 제8조의2 및 제26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 : 2029년 5월 13일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종전의 「항공안전법 시행령」의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2(통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경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u> <u>1. 법 제32조에 따른 항공기등의 정비등을 확인한 실적에 관한 정보</u> <u>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정보</u> <u>3.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발급에 관한 정보</u> <u>4.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에 관한 정보</u> <u>5.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정보</u> <u>6. 법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 등에 관한 정보</u> <u>7. 법 제43조에 따른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u>

성검사합격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8. 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
구술능력증명 등에 관한 정보

9. 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훈련 실적 등에
관한 정보

10. 법 제55조에 따른 운항승무
원의 비행경험에 관한 정보

11. 법 제63조에 따른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한 자
격인정 심사에 관한 정보

12. 법 제65조에 따른 운항관리
사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
보

13.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 등의 소속 항
공정비사의 업무 수행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14. 「항공사업법」 제2조제35
호의 항공교통사업자 소속 항
공종사자의 업무 수행실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정보

15.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
른 정정 또는 말소 신고 접수
된 정보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신 설>

16. 그 밖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갱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7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전산자료의 형태로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3(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5제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4(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할 대상기관 등) ① 법 제58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항공기 보유 대수, 항공종사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운항하는 항공기를 1대 이상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교육과정에 사용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소속된 항공

종사자가 1명 이상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항공기 보유 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 사용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항공기를 2대 이상 보유한 항공기사용사업자.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또는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헬리콥터인 경우에는 1대 이상 보유한 항공기사용사업자

2.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인 항공기사용사업자

③ 법 제58조제2항제5호에서 “항공정비사의 수, 수행하려는 정비 업무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

<신 설>

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의 정비등의 업무를 하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2.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에 사용되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 항공종사자가 5명 이상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제8조의5(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제8조의3 (생략)
<신설>

보고만으로 그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서 항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6 (현행 제8조의3과 같음)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자료의 수집) 법 제89조제3항에서 “공항운영자,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방부
2.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3.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
4.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8. (생략)

<신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생략)

1. ~ 23. (생략)

<신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의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 제89조제4항

-----.

1. ~ 8.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4제3항에 따른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1. ~ 23. (현행과 같음)

23의2.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

	<u>업자 및 국외운항항공기 운영 자에 대한 항공위험물 운송 허가</u>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25.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 른 공역에서의 항공기(「항공 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u>항공기는 제외한다</u>)의 운항승 인	25. ----- ----- ----- <u>항공기와 같은 법 제2조제38 호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 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u> ---
25의2. 삭제	
26. ~ 39. (생략)	26. ~ 39. (현행과 같음)
40. 법 제97조에 따른 정비조 직인증 및 세부 운영기준·정 비조직인증서의 <u>발급</u>	40. ----- ----- ----- <u>발급, 변경 검사, 정기 또는 수시검사 및 시정조치명령</u>
<u><신설></u>	<u>40의2. 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비조직인증 갱신</u>
41. ~ 60. (생략)	41. ~ 60.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 임한다.	② ----- ----- ----- -----.

1. ~ 6. (생략)

7. 법 제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8.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공지도의 발간 및 제
공

<신설>

8의2. (생략)

9. ~ 12. (생략)

③ ~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1. 법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
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

1. ~ 6. (현행과 같음)

7. ----- 제4항--

8. ----- 제4항--

8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
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의 수집

8의3.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격증
명의 갱신에 관한 업무 및 통
합경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
영에 관한 업무

1의2. -----

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신 설>

2. ~ 13. (생략)

⑦ ~ ⑫ (생략)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업무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증명 또는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3. ~ 8. (생략)

----- 관한 업무(시험 및 심사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2. ~ 13.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27조(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① 제26조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3. ~ 8. (현행과 같음)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 토교통부장관(제26조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자</u> <u>격증명 갱신에 관한 사무</u>
<u>1의2.</u> (생 략)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4